-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공 무 국 외 활 동 보 고 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요도시의 선진 복지체계를 비교시찰하고, 현지 기관 방문 내용과 습득한 정보,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활용 계획 등 등 공무국외활동의 성과와 결과를 보고드림

1 국 외 활 동 개 요

□ **기 간 : 2023. 3. 16.(목) ~ 3. 23.(목) 〔6박 8일〕**

□ **출 장 국 : 호주, 뉴질랜드**

□ **주 제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체계 비교 시찰**

○ 사회적 취약계층(영케어러, 노숙인 등) 지원정책 사례조사 및 정보 수집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및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사례 조사

□ **방문기관·시설**

도 시	방 문 기 관	방 문 목 적
시드니 (호주)	① 노숙인 시설(Matthew Talbot Hostel)	노숙인 일자리 지원 정책, 거버넌스 구축 현황 파악
	② 종합사회복지관(리버우드 커뮤니티 센터)	사회복지관 지원 프로그램 조사 및 시사점 도출
	③ 시드니의회, ④시드니 시청	여성, 복지, 건강 분야 우수 지원 정책 파악 및 도입 방안 검토
	⑤ 장애인직업재활시설(Fighting Chance)	비영리단체 장애인 지원 역할에 대한 시사점 모색
	⑥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인구감소와 높은 임대료로 인한 주거문제 등 해결방안 참고
오클랜드 (뉴질랜드)	⑦ Davis Funeral Service Centre (친환경 장례식 및 화장시설)	친환경 장례문화 현장답사
	⑧ Support Net Rotorua (장애인서비스 지원 시설)	장애인 서비스 지원시설 견학을 통해 정책 개발 참고
	⑨ Bupa The Garden Retirement Village and Care Home(은퇴자 거주돌봄마을)	은퇴자 마을 견학을 통해 노인 복지정책 개발 참고

☐ 출장단원 : 보건복지위원장 등 총 13명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의 원	보건복지위원실	위 원 장	강 석 주	단장(총괄)
2			부위원장	유 만 희	단원(복지분야)
3			부위원장	이 소 라	단원(여성가족분야)
4			위 원	김 영 옥	단원(여성가족분야)
5			위 원	윤 영 희	단원(공공의료분야)
6			위 원	최 호 정	단원(공공의료분야)
7			위 원	황 유 정	단원(복지분야)
8			위 원	김 경	단원(여성가족분야)
9			위 원	최 기 찬	단원(복지분야)
10	직 원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박 지 향	시찰단 지원 총괄
11			주 무 관	이 병 윤	여성, 의료분야 관련 자료 정리
12			입법조사관	우 현 재	의료, 복지분야 관련 자료 정리
13			입법조사관	김 종 훈	여성, 복지분야 관련 자료 정리

2 시찰단 역할 분담

❑ 역할 분담

단장 강석주

	복지 분야	여성가족 분야	공공의료 분야
위원	유만희 위원 황유정 위원 최기찬 위원	이소라 위원 김영옥 위원 김 경 위원	최호정 위원 윤영희 위원
방문 기관	◦ 시드니 노숙인시설 ◦ 시드니 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시드니 시의회 ◦ 시드니 시청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 영케어러 추진단	◦ 친환경 장례 및 화장시설 ◦ 시드니 시의회 ◦ 시드니 시청
주요 현안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제도 개편방안 시사점 모색 · 가족변화에 따른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 양성평등 정책개발 및 젠더 폭력 근절방안 ·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보육 돌봄의 공공성 강화 모색	· 보건의료 연구기관 운영 현황 · 음주 등 중독치료 정책 · 친환경 장례를 위한 개선방안

❑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소속	직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보 건 복 지 위원회	단 장	강석주	공무국외활동 총괄
2		단 원	유만희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발전방향 연구
3			황유정	노숙인 관련 주요 이슈 및 지원현황 연구
4			최기찬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5		단 원	이소라	영 케어러 지원방안 진행사항 연구
6			김영옥	일·생활 균형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연구
7			김 경	보육과 돌봄의 공공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
8		단 원	최호정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9			윤영희	음주 등 중독치료 관련 우수 정책 비교 연구

※ 현지 상황에 따른 기관방문일정 변경 및 현장의 기관 활동 설명 내용에 따른 질의 답변이 사전 준비와 일부 상이해져 의원별 업무 내용 주제를 일부 변경함

-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주제를 일·생활균형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변경(김영옥 위원)하고 기존 주제는 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하여 작성함

3 시찰 일정

방문국 (도시)	방문 기관·현장 / 활동 내용	시찰일정	기관 설명 / 활동 설명	관련 분야
뉴질랜드 (오클랜드)	○ Davis Funeral Service Centre (장사문화시설)	3/17(금) 16:00~17:30	- 도심 속에 위치한 친환경 장례 및 화장을 하는 장례시설	노인
뉴질랜드 (로토루아)	○ Support Net Rotorua (장애인 서비스 지원 시설)	3/18(토) 10:30~12:30	- 장애인 및 노인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개인 지원, 식사, 가정관리, 간병인 지원, 주간 프로그램, 의료지원 등)	노인, 장애인
뉴질랜드 (로토루아)	○ Bupa The Garden Retirement Village ane Care Home (은퇴자 거주·돌봄 마을)	3/19(일) 10:30~12:30	- 은퇴자 거주 마을	노인
호주 (시드니)	○ Matthew Talbot Hostel (노숙인 시설)	3/20(월) 10:30~12:00	- 시드니에 있는 노숙인시설로 1939년에 가톨릭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남성노숙인 시설	노숙인
호주 (시드니)	○ Riverwood Commonity Centre (시드니 종합사회복지관)	3/20(월) 14:00~16:00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하며, 주민의 요구에 의해 제안되어 어린이, 청소년, 가족,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복지
호주 (시드니)	○ 시드니 시의회 ○ 시드니 시청	3/21(화) 09:30~12:00	- 호주의 정부구조는 3층 체계로 연방정부, 주 및 준주정부,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음 - 시드니는 지방정부로 기관통합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복지, 여성, 건강
호주 (시드니)	○ Fighting Chance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3/21(화) 14:30~15:30	- 장애인 데이프로그램 센터, 직업훈련 센터 - 2011년 장애인 가족(형제·자매)이 만든 사회적 기업	장애인
호주 (시드니)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3/21(화) 16:00~17:00	- 이민, 출산, 노인복지, 의료복지 등 대한민국 현안 과제에 대한 논의	복지, 여성, 건강

※ 3/22(수) : 미 방문기관에 대한 의정활용 방안 간담회 개최

- 미 방문기관 : 건강진흥원, 영케이러추진단, 입양·노인·장애인 돌봄마을

4 기관방문 내용 및 기타 활동

1. Davis Funeral Service Centre (장사문화시설)

☐ 기관 개요

○ 1875년 설립된 장사시설(오클랜드 내 5개 센터 운영중)로서, 장례 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적·친환경적 지원을 통한 가족 내 이별 지원

- 장례 관련 계획·준비 지원, 장례 및 화장 진행 등

☐ 방문일시 : 2023년 3월 17일 (금) 16:00

☐ 방문장소 : 400 Dominion Road, Mt. Eden, Auckland

☐ 방문목적

○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시내에 위치한 도심 속 장례시설로 장례식 준비에 관한 일을 수행하며, 친환경 장례식 및 화장을 하는 장사시설임

○ 뉴질랜드의 장사문화시설 견학을 통해 서울시 친환경 장례문화 등 정책개발에 참고하고자 함

☐ 면 담 자 : Mike Powell(Branch Manager)

☐ 주요 질의답변

☞ 질의 응답

○ 이용 대상자 관련

Q. 주로 누가 이용하는지?

A. 이곳은 사망, 안락사, 자살 등 모든 죽음을 처리하고 있음. 오클랜드 주민의 60%가 본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운영 주체 관련

Q. DAVIS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 회사인가?

A. 본 시설은 개인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 회사임.

○ **친환경 장례 관련**

Q. 어떠한 측면에서 이 기관을 친환경적인 장례시설이라 하는 것인지?

A. 친환경이라는 것은 화장문화를 의미함. 전체 장례에서 화장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매장은 20-25% 수준임. 또한, 관도 나무 목재를 쓰고 플라스틱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유기 오염 등의 발생과 관련**

Q. 화장을 하게 되면 태우면서 발생하게 되는 유기 오염 등의 문제는 없는지?

A. 시신을 태우는 것은 DAVIS 장례식장이 아니라 오클랜드 시내에서 약 25km 떨어진 외곽에서 처리하므로 오염 문제가 덜할 것으로 생각함. 물론 화장시 평균 275g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 중에 있음.

○ **시신 보관 관련**

Q. 시신 보관은 어떻게 하는가?

A. 본 시설에서 영안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장례 비용 관련**

Q.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A. 상중하로 비용과 서비스의 차이가 있음. 하등급은 6천달러, 상등급은 13,000~17,000달러. 매장 시 추가 비용이 소요됨.

○ **정부의 지원 관련**

Q.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지?

A. 원인이 살인살해로 인한 사망자는 10,000달러, 사고사는 6,000달러, 빈곤층 사망자에게는 정부가 2,000달러를 지원해 줌.

☐ 기관방문 사진

EXIT

CHAPEL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해외비교시찰

CHAPEL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해외비교시찰

2. Support Net Rotorua
(장애인 서비스 지원 시설)

☐ 기관 개요

○ 뉴질랜드 로토루아의 장애인 서비스 및 지원단체로서, 장애인 및 노인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 개인 지원, 식사, 가정관리, 간병인 지원, 주간 프로그램, 의료지원 등

☐ 방문일시 : 2023년 3월 18일 (토) 10:30

☐ 방문장소 : 1166 Amohau Street, Rotorua 3010 NZ

☐ 방문목적

○ 뉴질랜드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시설 견학을 통해 서울시 장애인 복지 정책개발에 참고하고자 함

☐ 기관방문 사진

3. Bupa The Garden Retirement Village ane Care Home (은퇴자 거주·돌봄 마을)

☐ 기관 개요

○ 뉴질랜드 로토루아의 은퇴자 거주·돌봄 마을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마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범위의 돌봄 옵션을 제공

- 다양한 숙박시설과(독립, 공동체 현대적인 60개의 1~2개 침실로 구성된 빌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부분은 커뮤니티센터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방문일시 : 2023년 3월 19일 (일) 10:30

☐ 방문장소 : 15 Hodgkins Street, Pukehangi, Rotorua 3015 NZ

☐ 방문목적

○ 뉴질랜드의 은퇴자 거주·돌봄 마을 견학을 통해 서울시 노인 복지정책 개발에 참고하고자 함

☐ 기관방문 사진

4. Matthew Talbot Hostel (노숙인시설)

☐ 기관 개요

○ 'The St Vincent de Paul Society'(노숙인, 빈곤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가톨릭 자선단체)에 의해 설립된 노숙인 시설로서, 노숙인 혹은 노숙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 즉각적인 주거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적 주거 안정성 확보 지원

- 임시 숙소 및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21세 이상의 남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식사, 헬스 케어, 법률, 주택 서비스 등 지원

☐ 방문일시 : 2023년 3월 20일 (월) 10:30

☐ 방문장소 : 22 Talbot Pl, Woolloomooloo NSW 2011

☐ 방문목적

○ 호주는 대량실업이 발생한 대공황 때 집을 잃은 가족이나 떠돌이 노동자를 위한 숙소 제공이 그 시작으로 20세기 초 노숙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시작되었음

○ 호주 노숙인 일자리 지원정책, 민간단체(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과의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호주 거리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개발에 참고하고자 함

☐ 면 담 자 : Mike(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 Mark(매니저)

☐ 기관 소개 및 주요 질의답변

☞ 기관 소개 ○ 우선, 시설 이용자들이 고질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낯선 사람들에게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미팅을 2층의 기부물품 저장소에서 진행하게 된점과, 시설의 투어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함.

○ 본 시설은 NSW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위기에 처한 21세 이상의 남성 노숙인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일종의 교육센터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기술을 익히고 싶은 사람들, 남녀 상관없이 도자기 공예, 컴퓨터, 그림, 정원 가꾸기, 요리, 요가 같은 취미 활동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여기 센터를 방문하는 남성들은 각자 개인사가 다르고 사정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각자 나름대로의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것.

- 유아시절 학대 또는 쫓겨나거나 가정폭력 때문에 친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해서 양부모 집을 전전했다든지, 그리고 정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기가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이므로 그 이후에는 갈 데가 없어서 거리를 떠돌거나 술이나 마약에 의존해 살아가면서 알콜 중독,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여기서 파트너십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지역 보건건강단체들과 연계하여 이곳에 의사들도 직접 방문하고 간호사나 영양사 등 다양한 보건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진료를 해주고 있음.

☞ 질의 응답

○ 방문 진료 및 법률지원 관련

Q. 의사 등의 보건인력이 얼마나 자주 방문하여 진료를 하는지?

A. 간호사는 1주일 내내 상주, 의사는 주 2일, 정신치료사 또는 심리학자는 주 2일. 오후 5시 이후 시간과 주말에도 필요할 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주변 병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음.

Q. 법률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A. 노숙인 법률상담 프로그램인데, 보통은 대형 로펌에서 프로보노 개념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1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노숙인들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 **노숙인 자립 현황 관련**

Q. 시설에서 자립해서 퇴소하는 노숙인의 평균 비율이 얼마나 되나?

A. 65~70%의 남성 노숙인들이 자립해서 퇴소함. 각 케이스 매니저를 배정하여 그 사람 상황에 맞게 플랜을 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가족들과 연결하거나, 센터링크(가장 큰 복지기관)를 통해서 실업수당, 경로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일자리 자립 지원 등 각자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하여 자립율이 높음.

Q. 최근 3년간 자립율이 평균 65-70%된다고 했는데 그럼 다시 돌아오는 사람 비율은 얼마나 되나?

A. 자립한 사람들의 약 40%가 다시 돌아와 방문함. 재방문 이유는 주거 필요 때문만 아니라 친구 만남, 직업기술 향상 교육, 장애나 정신질환의 지속적인 케어, 자립하여 혼자 계속 살아나가기 위한 재정관리 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등 다양함.

○ **노숙인 시설의 이용 기준 및 현황 관련**

Q. 노숙인들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립할 때까지 지낼 수 있는 것인지?

A. 기본적으로 위기대처팀에서 주는 기간은 3개월임. 다만 케이스 매니저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6개월, 가장 길게는 필요에 따라서 12개월까지도 연장될 수 있음.

Q. 이 시설에 몇 명 정도 계시고 이용자들의 주 연령대는?

A. 주 연령대는 21세~40세임.

Q. 여기 들어오려면 규정 같은 게 있는지? 또 시설 밖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A. 이용자의 특별한 기준이나 제한 없음. 다만 이용 인원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시설에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기관과 협력하는 다른 단체에 연결하고 소개하기도 함.

Q. 노숙자, 예를 들어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수당 등 다양한 지원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나?

A. 정부에서 수당 등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부인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서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일주일에 10군데 취업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조건들이 있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기는 사실상 힘들고, 다만 여기서 하는 일은 그 사람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최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바람.

○ **노숙인 시설 운영현황 관련**

Q. 이곳은 수용시설인가? 이용시설인가?

A. 둘 다임. 여기서 최종 목표는 그 사람 상황에 맞게 케이스를 배당하여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 다른 정부단체나 보건단체들과 협력해서 추천을 통해서 사람을 받기도 하고 직접 도움이 필요해서 오는 경우도 있음.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가족들을 다시 연결하는 등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됨.

Q. 노숙인이 발생하면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하는데, 주정부나 시정부에서도 하겠지만 본 시설에서 별도로 예방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하는지?

A. 예방사업은 주정부 소관인데, 실제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은 많이 없음. 위니스의 경우, 현재 공용주택이 가득 차서 입주 대기자만 5만명, 20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5천개의 공용주택을 건설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주정부 선거 중인데 양당 어디도 노숙인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거나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음. 정부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야 하는데 충분치가 않음.

Q. 이와 유사한 기관이 시드니에 몇 개나 되나?

A. 굉장히 많음. 우리 같은 큰 규모의 단체도 있고, 살베이션 아미, 미션 오스트레일리아드, 앵글리 케어, 캐슬릭 케어 같은 종교단체, 중간 규모나 소규모 단체도 많음. 정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적에 맞게 특별 노숙인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별 지원금이 할당되거나 또는 단체별 지원이 되는 방식이 있음.

○ **거리 노숙인 현황 및 시설 홍보 관련**

Q. 노숙인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가 있나요?

A. 호주는 기차역이지 전철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처럼 서울역 안에 들어가서 지낸다든지 하는 것은 힘들지만, 여기도 보통 정부청사 앞 또는 터널 등에 모여서 지냄.

Q. 노숙인들이 여기를 오려면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

A. 두 가지 방식으로 알리고 있음. 가장 중점적으로는 지역사회를 통해서 병원, 경찰, 커뮤니티센터, 시민들과 연계하여 길거리에서 노숙인을 발견하면 그 분들을 여기로 안내할 수 있는 것, 둘째는 아웃리치 워커를 통해서 길거리, 공원 등 직접 나가서 프로그램을 소개함.

○ **노숙인 복지정책 관련**

Q. 지금까지 노숙자 복지정책 중 시행착오가 많았을 것. 과거 시행착오를 근거로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수정한 정책이 있나?

A. 정책 차원의 큰 틀에서 답변을 드리긴 어려움. 다만 여기에서 시행했던 것 중에서는 난민들이 임시비자를 받고 정식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소득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그 분들도 지원을 받도록 바뀐 사례가 있음.

○ **시설측 질의(Mathew Talbot Hostel→ 보건복지위원회)**

Q. 서울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활동하시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소개해줄수 있나?

A. 지금 우리가 하는 역할은 현장에서 하는 일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집행 정책에 대한 실효성 판단, 관련 예산 집행 심의 및 조정임.

Q. 보딩하우스라는 공용주택이 있는데 12명의 성인 남성이 모여 사는 주거 공간임. 주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인데 렌트를 싸게 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인데 한국도 그런 곳이 있는가?

A. 서울은 그보다 더 큰 규모,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결혼한 청년에 대한 신혼부부 주택을 낮은 이자로 분양 지원, 그리고 장기전세 임대주택 정책 등 다양함.

☐ 기관방문 사진

5. Riverwood Commonity Centre
(주민운영 종합사회복지관)

☐ 기관 개요

○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하며, 운영형태는 시 직영이나 공사 운영 또는 법인 민간 위탁의 형태가 아니라, 주민의 요구에 의해 제안되었고 주민에 의해 운영

- 어린이, 청소년, 가족,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 방문일시 : 2023년 3월 20일 (월) 14:00

☐ 방문장소 : 151 Belmore Rd North, Riverwood NSW 2210

☐ 방문목적

○ 한국의 종합사회복지관에 해당하는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의 운영실태,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시사점 도출, 서울시 정책개발에 반영하고자 함

☐ 면 담 자 : Matthew Martin / General Manager

☐ 기관소개

☞ 기관 소개

○ 본 시설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노인까지 전 연령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시설 외부에는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해두었고, 1층 한편에는 우리나라의 다목적강당 형태로 어르신들이 모여 같이 식사하고 춤추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

○ 또 다른 한편에는 방과 전후 아이들 케어와 부모들의 커뮤니케이션(OOSHS, Ouy Of School Hours)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실내 농구코트가 설치된 실내 체육시설이 있어 이곳에서는 한국의 유명한 태권도 관장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함

☐ 기관방문 사진

6. 시드니 시의회 / 시드니 시청

☐ 기관 개요

○ 시드니 시의회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률에 따라 지방 주민(시민)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 지방 자치 제도 강화, 지방 발전과 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증진, 지방정부와 협력

○ 시드니 시청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 행정기관

☐ 방문일시 : 2023년 3월 21일 (화) 09:30

☐ 방문장소 : Town Hall House Gadigal Country Level 2, 456 Kent Street Sydney 2000

☐ 방문목적

○ 여성, 복지, 건강 분야의 우수 지원정책 파악 및 서울시 정책 도입 방안 검토

○ 시드니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조사 및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업지원 사례,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정책의 실효성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면 담 자 : Sylvie Ellsmore 부시장

☐ 기관 소개 및 주요 질의답변

☞ 기관 소개

○ 서울시의회 의원 규모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드니시의회 의원은 총 10명임. 그러나 호주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드니 시민은 25만명임.

○ 시드니시의회와 시청은 의장이 시장을, 부의장이 부시장을 겸직하고 있음. 다음주 주말이 총선이라 시장을 대신해 부시장이 환영을 해 줌.

☞ 질의 응답

○ 시드니시의회의 양당체제 및 삼권분립 관련

Q. 서울시의회의 경우 보수당과 진보당이 거의 양당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호주도 양당체제라고 알고 있음. 시드니시의회 의원은 자유당과 노동당이 정당별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

A. 호주도 양당체제로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역사적으로 양당체제로 인한 부패 등의 폐해가 굉장히 많았음. 그래서 현재 집권당은 무소속이고, 무소속 의원이 제일 많고, 노동당 1명, 자유당 1명임. 나(부시장)는 녹색정당 소속임.

Q. 시드니시의회와 시청은 시장과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상호 견제를 어떻게 하는지?

A. 연방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지방정부에서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함. 모두가 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여 반대가 심하지 않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집행이 됨. 실제로 여기에서는 그런 견제가 직접 주민들을 통해서 이루어짐. 그래서 정부가 양당이 아닌 곳으로 바뀜. 그리고 코비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경제위기가 있어서 모든 카운슬에 굉장히 심한 재정 위기가 있었음. 그 후로는 카운슬에서 어떤 것에 돈을 쓰고 어디에 예산을 집행하는지 관련하여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감사도 진행되고, 예산 집행하는 데 굉장히 조심스러움.

○ 시드니시의회의 운영체제와 지원인력 관련

Q. 시드니시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A. 시의원이 많지 않아서 상임위원회를 두고 운영하지는 않지만 다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을 초청하여 필요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고 있음.

Q. 시의원들이 정책지원관 등 보조 인력 없이 지역 민원을 살피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만드는 일들을 모두 챙기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A. 주정부에서 큰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기초로 두고 그 위에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데, 협업을 하고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안 하고는 카운슬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다름. 예산도 많고 지원도 많은 카운슬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서울의 사례는 호주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함.

○ **시드니시의 정책(주거, 저출산, 노동시간, 장애인고용) 관련**

Q. 여기에 와서 들어보니, 월세가 굉장히 올랐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1인가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은 고비용사회여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여 출생율이 낮음. 시드니도 월세가 올라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A. 시드니가 현재 전세계 4위로 살기 비싼 도시가 되었음. 원래 시드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주거비용이 비싸지 않은 도시였는데,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하면서 지난 6개월간 렌트가 20% 상승함. 이에 청년 노숙인도 늘어나는 추세임.

그러나 호주 출생율은 큰 영향이 없음. 항상 이민에 의존해왔고, 현재도 호주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 호주는 그중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기술이 있거나 호주에 경제적·기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민을 허용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 큰 문제는 없었음. 그런데 이 문제를 지방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고, 주 정부에서 양당이 치열하게 대립하며 렌트 가격의 상한선 제한을 두는 것 관련 법안을 논의 중에 있음. 지방정부는 그 사안에 대하여 계속 로비하고 있는 상황임.

Q. 렌트를 규제하는 게 사회주의적일 수 있지 않나?

A. 호주처럼 부동산이나 집값을 규제하지 않는 나라가 많지 않음. 다른 선진국들도 집값을 규제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임.(통역자 부연설명: 부의장이 녹색정당 소속이어서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해 바람.)

Q. 한국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전체 인원의 3% 이내에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채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음. 시드니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있나?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이용하는 쉼터가 있는지?

A. 호주는 장애인들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선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다만 법률이나 정책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규제는 없음. 다만,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 시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장려하고 있음. 그리고 별도로 대기업은 다양성 원칙이 있어서 여성을 몇 %, 다른 나라 출신자 몇 % 등 고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님.

그리고 쉼터는 카운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고 어제 방문한 Vinnies 등 민간단체나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공공 공간을 사용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카운슬에서 승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그것을 앞으로 의회에 제안해보겠음.

○ **시드니시의 주요 이슈와 중점정책 관련**

Q. 시드니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최근의 이슈 또는 정책이 무엇인지?

A. 핵심 이슈는 두 가지임. 첫째는 기후변화, 둘째는 안정적 주거비용. 왜냐하면 노숙인들이 증가하고, 시드니시의 경우 유학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드니대학교,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의 유학생 비율이 20-30% 정도로 유학생들이 기여하는 예산이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유학생 수입에 의존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많지 않다보니 시드니시의 굉장히 큰 문제임. 그런데 계속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강한 규제와 부동산 관련하여 엄격한 법률이 만들어져야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음.

Q. 본인도 기후에 관심이 많음. 기후변화는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도 이 문제를 전담하는 녹색당이 있음. 그런데 녹색당 후보들이 국회나 지방의회에 전혀 진입을 못했음. 그런데 녹색정당 소속 의원이 부시장까지 겸하고 있어서 호주 시민들이 현명하시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 주 선거가 있다고 들었는데 꼭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시기 바람.

A. 감사하다. 이번 주말에 선거가 있는데 시민들이 예전처럼 의욕에 넘치는 선거는 아닌 것 같음. 코비드를 오래 겪어왔고 몇 차례 봉쇄(rock-down)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가지고 있음. 이런 상황이다보니 양당체제에서 소수당이 독자적으로 성공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다른 정당과 연계해야만 과반석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함.

○ **시드니시의 선거운동 관련**

Q. 한국과 달리 선거운동이 잘 안 보임. 선거 '프로파겐다'가 무엇인지?

A. 호주는 투표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됨. 그래서 조금 더 수동적일 수 있음. 왜냐하면 내가 선거 캠페인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확성기를 들고 다니며 선거 유세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잘 없음. 투표율이 가장 안 좋을 때도 최소 85-90% 나오기 때문에 한국 선거 유세문화와 다름.

○ **시드니시의 복지예산 관련**

Q. 시드니 올해 예산에서 복지 관련 비중이 어떻게 되나?

A. 호주는 정부가 세 단계로 나뉘어 있음.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복지는 연방과 주정부 관할이므로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거나 집행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정부 역할은 지역단체에 보조금 제공, 공공시설 이용 지원, 어린이집 등을 운영 지원함. 그것을 비율로 따지면 예산의 약 25-35% 수준임.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건물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관방문 사진

7. Fighting Chance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 기관 개요

○ 2011년 장애인 가족(형제·자매)이 만든 사회적기업으로서, 젊은 장애인들의 공동작업 공간, 혁신적인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모델로 적극적인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직업훈련, 고용기회 제공을 통한 고용전환, 실제와 같은 근무환경 조성

☐ 방문일시 : 2023년 3월 21일 (화) 14:30

☐ 방문장소 : 5 Skyline Place, Frenchs Forest, Sydney 2086 Jigsaw - 22 Rodborough Road, Frenchs Forest, NSW 2086

☐ 방문목적

○ 장애인정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현황과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향후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면 담 자 : Michael Parker(매니저)

☐ 기관 소개 및 주요 질의답변

☞ 기관 소개

○ Fighting Chance는 Laura O'Reilly(설립자 겸 CEO)가 장애인 동생을 위해 만든 시설로 자폐 등 장애를 가진 약 23명 정도를 보호사가 1:1로 매칭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에서 장애인에 직접 대신 시설에 보조를 하고 부족한 금액은 법인에서 자체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 야외에는 바베큐시설부터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2층에는 방음 장치가 설치된 방이 여러개 있으며 소리 등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행동치료와 소규모 그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본 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① 워크 프로그램 : 분업하여 패킹 등 작은 소일거리, 강아지 산책 등 직업훈련,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서 분배하기도 하며 돈을 버는 활동, 실제로 한 참가자는 돈을 벌어 유럽여행을 다녀오기도 함.

② 라이프 프로그램 : 잔디깎기, 세탁, 요리 등 간단하며 위험하지 않은 범위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활동

③ 아트 프로그램 : 페인팅, 그림 그리기, 헬스, 요가, 스트레칭과 야외 스포츠 등 활동

④ 기타 프로그램 : 주간에는 행동치료와 언어치료도 하고 있으며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하고 있음.

☐ 기관방문 사진

8.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 기관 개요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1953년 03월 설치되었으며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 퀸즐랜드(Queensland)주,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를 관할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20대 이태우 총영사가 부임되었음.

○ 재외국인 보호 및 한인회 등 재호 동포단체 지원업무 뿐만 아니라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과 호주간 인적교류와 공공외교 활동 등을 지원함.

☐ 방문일시 : 2023년 3월 21일 (화) 00:00

☐ 방문장소 :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 방문목적

○ 이민 인구감소와 높은 임대료로 인한 주거 문제 등 시드니시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 관련 정책개발에 참고하고자 함.

☐ 면 담 자 : 이태우 총영사

☐ 주요 질의답변

☞ 질의 응답

○ 이민 정책 관련

Q. 호주 이민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와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A. 높아진 집값, 이민 인구 증가에 따른 관리 문제, 필요시 임시 비자만 발급하는 등 문제로 시드니 뿐만 아니라 전체 호주 이민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호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영주권 획득이 쉬운 편이며, 양질의 노동력이 계속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민을 장려하고 다양한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있음. 최근에는 호주 영주권 획득 시 영어 성적이 많이 올라 미용 등 기술 이민자 수가 감소해 성적을 낮춰달라고 건의하고 있음.

○ **한인 정착 관련**

Q. 호주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한국인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영사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보임.

A. 과거에는 영어권 문화에 준비가 안된 상태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많아 지역사회에 적응을 못하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최근에는 유학생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직장만 구하면 비자 연장도 계속되고 영주권도 쉽게 나옴. 호주는 인당 GDP나 임금이 높고 인구밀도가 적어 영어능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정착한다면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음. 영사관도 교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관련**

Q. 최근 임대료가 많이 올라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민 온 청년들이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에 대해 영사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A. 영사관 차원에서 주거 관련 지원프로그램은 없음. 임대료 문제는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임. 호주는 임대료를 한국의 월세 대신 주당 받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기본 1년으로 임차인 기준에서 주거환경은 열약한 상황임. 다음 주에 있을 뉴사우스웨일스 주 총선의 TOP3 주제 중 하나가 주거비 개선임. 다만 호주는 노동력 부족으로 집을 한꺼번에 공급하기도 어렵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없어 집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워보임.

최근에는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쉐어하우스를 허위광고하여 이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영사관에서는 호주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허위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관련**

Q. 시의원들이 정책지원관 등 보조 인력 없이 지역 민원을 살피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만드는 일들을 모두 챙기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A. 주정부에서 큰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기초로 두고 그 위에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데, 협업을 하고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안 하고는 카운슬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다름. 예산도 많고 지원도 많은 카운슬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서울의 사례는 호주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함.

○ **외국인 의료정책 관련**

Q. 임시비자로 호주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응급치료가 필요할 때 비용 등 어떻게 처리하는지?

A. 외국인에 대해 호주는 미국과 비슷함. 여행자 보험가입 여부 등을 떠나 우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를 후청구함. 영사관 차원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정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비용에 대한 지원을 어려운 상황임.

□ 기관방문 사진

9. 건강증진원 - 북부지역사무소
(Health Promotion Agency - Northern Regional Office)

□ 기관 개요

○ 뉴질랜드 공중보건법에 의해 설립된 보건부 대행기관으로서, 뉴질랜드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뉴질랜드 국민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줌

- 건강, 웰빙 및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
- 질병, 질병 및 부상 예방
- 개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언을 제공하고 권장 사항을 제시

□ 방문목적

○ 뉴질랜드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개발, 자문, 캠페인 등을 수행하는 공공 연구기관의 주요 기능과 우수 프로그램 사례 연구

- 특히, 음주 관련 특화된 정책 및 알콜 중독치료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의 음주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미방문사유 : 비행기 2시간 연착으로 방문 불가

□ 기타 조사자료 등

○ 우리나라 및 뉴질랜드 건강증진원 비교

구분	뉴질랜드 건강증진원(북부지역사무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목적	○ 뉴질랜드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뉴질랜드 국민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설립근거	○ 뉴질랜드 공중보건법에 의해 설립된 보건부 대행기관	○「국민건강증진법」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수행기능	◆ 핵심 역할은 다음과 같은 건강 증진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지원하는 것 -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 - 질병, 질병 및 상해를 예방 - 건강, 웰빙 및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환경을 지원 -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감소시킴 ◆ 특히 절주정책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특화되어 있음	◆ 건강증진정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사업 기획·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2017. 01.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신규추진 ◆ 건강증진사업 기술개발 및 기술자문·지도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지표개발 및 각종 통계생산·조사분석 및 제공과 이에 관련된 연구사업 ◆ 건강증진·지역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및 협력에 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 관련 교육, 연수 및 홍보 ◆ 개발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음주폐해예방 관리사업	◆ 특히 뉴질랜드의 음주금지구역정책(alcohol ban areas), 임산부의 알콜중독치료정책(pre-testie bestie campaign), IT 기반 알콜중독 치료(the alcohol journeys tool, the alcohol risk communication tool) 프로그램 조사	◆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 생애주기별 음주폐해예방 교육 ◆ 음주폐해예방 홍보 및 캠페인 ◆ 지역사회 음주자 및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 단기개입 및 연계

○ 뉴질랜드 음주금지구역(alcohol ban areas) 정책

- 뉴질랜드는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2)』 제145조(지방정부의 일반적 조례제정권) 및 제147조(지방정부음주규제 조례제정권)에 따라 지방정부의 조례(Bylaw)를 통해 '음주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대부분의 뉴질랜드 지방정부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공장소 및 자동차 등에서 술의 소유 및 소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오클랜드 역시 『음주규제조례 (Alcohol Control Bylaw 2014)』를 통해 '음주금지구역'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

오클랜드『음주규제조례』(Alcohol Control Bylaw 2014)

(조례 총 5장 12조 조문 구성 中 주요 내용 요약)

▶**제1조(제목) 및 제2조(시행) 조례명**: 음주규제조례, 시행일: 2014. 12. 18.
▶**제4조(목적)** 오클랜드에서 주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장소 내에서 범죄와 무질서를 감소시키고자 제정
▶**제6조(음주금지구역)** 제7조에 따라 의회에서 지정하는 공공장소, 차량 및 표1(특정행사 개최시 임시규제 지역)에서는 주류를 소지, 운반, 소비할 수 없음
▶**제7조(의회지정 규제구역)** 시의회는 공공장소에서 주류 소지, 운반, 소비를 규제하기 위해서 장소 및 시간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제9조 및 10조(벌칙규정)** 뉴질랜드 경찰은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2)』제169조에 따라 규제 위반자에 대해 조사, 체포 등을 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규제법(Local Government (Alcohol Ban Breaches) Regulations 2013) 제4조에 따라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주류 판매자격(Liquor License)을 보유한 식당이나 상점에서만 주류 판매가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을 증명하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나이인증카드(Hospitality Nz 18+)를 보유한 사람만 주류를 구매 소비할 수 있음**

○ **현재 서울시의 '음주금지구역'도입 추진을 위한 논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금주구역 지정)』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을 통해 관할구역내 특정장소를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현행『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음주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23. 2. 2.~'23. 2. 22.)를 완료한 상태임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가. 알코올은 개인의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중독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각종 범죄 발생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주류광고 강화, 금주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 ('20.12.29./'21.6.30.)

▶ 주요내용

가. 금주구역 지정 장소 신설(안 제4조)

-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도시공원,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대중교통시설 등 금주구역 신설, 음주 가능시간 별도 지정,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가능

나. 금주구역 운영 등 신설(안 제5조)

-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 권고

다.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 변경 및 부과기준 제시(안 제11조)

-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징수 신설

- 다만,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장소에 '하천·강 구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특정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선별적 지정도 가능하여 '지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됨.
- 따라서, 서울시 개정안 조례와 유사한 '음주금지구역' 정책을 기 추진하고 있는 뉴질랜드 사례 연구 및 비교 시찰을 통해 그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음주폐해예방 및 감소 주요 정책 (판매 및 소비제한 방법)

- (공공장소 음주제한) 음주폐해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교육기관, 의료시설, 도로, 대중교통, 작업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함.

주요 국가별 공공장소 음주 규제 현황

(○ : 완전규제, △ : 부분규제, × : 규제없음, □ : 자발적 규제)

국가	학교	정부 기관	의료 기관	레저 행사	공원 및 거리	대중 교통	종교 장소	스포츠 행사	직장
러시아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호주	□	□	□	△	△	△	□	△	□
프랑스	○	×	○	×	×	△	○	△	△
영국	□	×	□	△	△	△	×	△	□
일본	×	×	×	×	×	×	×	×	×
중국	○	○	×	×	×	×	×	×	×
싱가포르	×	×	○	△	△	△	×	△	×
태국	△	△	△	×	△	○	△	×	△
한국	△	△	△	△	△	△	△	△	△

주 :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1.6.30.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한해 음주가 제한됨
싱가포르는 2015년 법령개정을 통해 공공장소(문화·예술·오락장소, 종교장소 등)에서 금주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자료 :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Alcohol Policy Report(2018)
http://apps.who.int/gho/data/node.main.A11907?lang=en
https://www.who.int/substance_abuse/publications/en/Alcohol%20Policy/%20Report.pdf(규제정도 및 단속주체)

- 태국과 러시아는 개인 거주지, 클럽, 술집 외의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함
- 캐나다는 주류 판매점을 제외한 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함
- 싱가포르는 정해진 시간동안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함
- 호주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길거리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주자의 불쾌한 행위를 경찰이 즉시 규제함

○ OECD 보건·의료 통계(한국, 호주, 뉴질랜드)

OECD 보건 · 의료 통계 (한국, 호주, 뉴질랜드)						
연번	지표명	기준연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OECD평균
1	기대수명(년)	2020	83.5년	83.2년	82.3년	80.5년
2	영아사망률 (단위: 명/ 출생아 1,000명당)	2020	2.5명	3.2명	4.3명	4.1명
3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 인구 100,000명당)	2019	164.8명	198.8명	221.2명	204.2명
4	순환기계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 인구 100,000명당)	2019	136.5명	175.5명	237.2명	286.5명
5	호흡기계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 인구 100,000명당)	2019	86.9명	66.1명	70.3명	73명
6	당뇨병 사망률 (단위: 명/ 인구 100,000명당)	2019	17.7명	20.3명	20.1명	24.7명
7	치매 사망률 (단위: 명/ 인구 100,000명당)	2019	9.1명	42명	41.4명	27.6명
8	자살 사망률 (단위: 명/ 인구 100,000명당)	2019	25.4명	13.3명	12.1명	11.1명
10	흡연인구 비율(15세 이상 인구, %)	2020	15.9%	11.2%	11.9%	16%
11	주류 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ℓ)	2020	7.9L	9.5L	8.7L	8.4L
12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15세 이상 인구, %)	2020	37.8%	65.2%	66.4%	58.7%
14	임상 의사(인구 천 명당, 명)	2020	2.5명	3.9명	3.4명	3.7명
15	의학계열 졸업자(인구 십만 명당, 명)	2020	7.2명	14.9명	10.4명	13.6명
16	간호 인력(인구 천 명당, 명)	2020	8.4명	12.3명	10.6명	9.7명
17	간호대학 졸업자 수(인구 십만 명당, 명)	2020	42.4명	62.9명	36.9명	31.4명
18	총 병원 병상(인구 천 명당, 개)	2020	12.7개	3.84개	2.5개	4.3개
20	외래 진료 횟수(국민 1인당, 건)	2020	14.7건	6.8건	3.8건	5.9건
21	평균재원일수(병원 입원환자 1인당, 일)	2020	19.1일	5.3일	6.7일	8.3일
2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65세 이상 인구)	2020	80.7%	62.2%	73%	51.6%
25	GDP대비 경상의료비(%)	2020	8.4%	10.6%	9.7%	9.7%
26	1인당 경상의료비(US$PPP)	2020	$ 3,582	$ 5,627	$ 4,469	$ 4,272
28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개)	2020	58.9개	50.1개	51.1개	45개
29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65세 이상 인구 백 명당, 명)	2020	4.5명	7.3명	6.8명	6명
30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65세 이상 인구, %) [재가]	2020	7.4%	8%	7.3%	10.4%
31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65세 이상 인구, %) [시설]	2020	2.6%	5.9%	4.1%	3.6%

10. 영케어러 추진단 지역사무소 (Carers NSW Australia)

☐ 기관 개요

○ 〈2010년 케어러인정법(Carer Recognition Act 2010)〉이 제정, 장애인과 심신질환자, 노인에게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영케어러의 사회적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함

○ 영케어러 추진단 지역사무소는 2015년부터 호주 내 비공식 돌봄 제공자들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

☐ 방문목적

○ 가족과 친지를 돌보는 아동과 청소년을 의미하는 '영 케어러'의 지원현황과 그 필요성을 살펴보고, 2015년부터 비정부기구인 Carers Australia를 통해 시행 시행되고 있는 영케어러에 대한 학비보조프로그램 등 호주의 영케어러에 관한 정책들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자 함

☐ 미방문사유 :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방문 불가

☐ 기타 조사자료 등

○ 호주현황

- 2015년부터 영 케어러 학비보조금 프로그램이 가동됨
- 올해 기준 영 케어러 1명 당 연간 3천 호주 달러(255만 원) 지급
- 영 케어러들이 부양 부담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며 부양 부담이 학업 중단과 취업 실패,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단초를 마련함

① 학비 보조를 받는 영 케어러 중 37%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 중 55%가 보조금을 받은 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시간 줄어듬

② 학업성취도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학비 보조금을 받은 영 케어러들 중 76%가 성적이 향상됨

○ 국내현황

-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정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등 전반적으로 미흡
- 교육부(학생,청소년담당),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담당), 보건복지부(복지대상자발굴) 등 대상자 특성 등으로 부처간 책임소재 모호
- 부산, 광주 등 지자체 중심으로 '21년 조례제정 등 추진, 서울시는 22년 가족돌봄청년지원조례 제정
- 최근 들어 생계와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영케어러를 비롯하여 느슨한 가족관계로 인한 1인가구,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 취업을 포기당한 니트청년 등 신사각지대 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관련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

11. 입양·노인·장애인 돌봄마을 (Anglicare Mowll Village)

□ 기관 개요

○ 모든 단계에서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독교 비영리단체로서, 시드니, 블루 마운틴, 서던 하이랜드, 일라와라, 숄헤이븐 및 북부 내륙을 관할

-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진
- 물질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및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 각 사람에게 삶을 풍요롭게하는 보살핌과 연민을 제공
- 본당 및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의 존엄성, 안전, 참여 및 복지를 증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방문목적

○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 전달체계, 돌봄체계를 조사하여,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운영방식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방문사유 :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방문 불가

12. 미방문기관에 대한 의정활용 방안 간담회 개최

☐ 개요

○ 간담회 일시 : 2023. 3. 22.(수) 14:00 ~ 17:00

○ 목적

- 항공기 출발지연과 코로나19로 인한 기관폐쇄 등의 사유로 방문이 불가한 기관에 대해 자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서울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함

○ 미방문 기관 및 사유

도 시	미방문 기관	방문 계획	미방문 사유
오클랜드	① Health Promotion Agency - Northern Regional Office (건강진흥원 북부지역사무소)	3.17.(금) 14:30	비행기 출발 지연으로 방문시간에 도착 불가
시드니	② Carers NSW Australia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영케어러추진단)	3.22.(수) 09:30	방문기관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방문 불가
	③ Anglicare Mowll Village (입양·노인케어·장애인돌봄 마을)	3.22.(수) 11:00	

☞ 3.22.(수) 기관방문이 취소됨에 따라 대체활동으로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3.21.화) 방문 추가 및 미방문기관에 대한 의정활용 방안 간담회 개최(3.22.수)

☐ 간담회 내용

○ 뉴질랜드 건강진흥원 관련 정보 공유 및 의정활용 방안 논의

- 뉴질랜드 건강증진원은 2000년 뉴질랜드 공중보건 및 장애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에 설립된 기관으로, 보건부 장관의 감독 하에 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며, 특히 절주정책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특화되어 있음

- 한국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시민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를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내용을 신설하였고, 서울시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음주금지구역' 지정을 반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음
- 뉴질랜드 음주금지지역 정책의 도입과정과 운영방식, 그리고 성과와 개선점, 알콜중독 치료 및 예방 사업 등 유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하여 서울시 제도 도입 및 초기 안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참고하기로 함

○ **호주 영케어러추진단 관련 정보 공유 및 의정활용 방안 논의**

- 2010년 호주에서 「케어러 인정법(Carer Recognition Act)」 제정. 2013년 연방정부 선거 공약에서 최초 등장한 '영케어러 학비보조금 프로그램'이 2015년 Carers Australia(호주 내 비공식 돌봄 제공자들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를 통해 시행됨. 가족과 친지를 돌보는 아동과 청소년을 의미하는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 제도는 서울시에도 존재함. 2021년 홀로 아버지를 간병하던 20대 청년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발생 후 서울시는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거주 14세~34세 가족돌봄청년 대상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23년 상반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 정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호주 영케어러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모니터링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참고하기로 함.

5 시사점 및 의정활동 활용 계획

1. Davis Funeral Service Centre(친환경 장례 및 화장시설)

○ 우리나라의 21년 통계청 조사 결과, 선호 장례 방법 1위는 화장 후 봉안(납골당 등) 34.6%, 2위는 화장 후 자연장 33%이며 매장은 9.4%로 집계됨.

○ 과거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매장을 선호하였으나 비용 부담, 정부 정책 등의 배경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화장을 선호하는 인구의 증가 폭이 커졌으며, 소규모 가족장을 선호하는 등 장사문화의 변화가 있음.

○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은 인구 950만 6778명임에도 화장시설은 2개소만 운영함에 따라 시민이 화장시설을 이용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1.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4 ㅇ 설 립 : 2011.12.14., 화장로 11기 신축(※ '12.1.16. : 서울추모공원 가동) ㅇ 시설규모 - 부 지 : 71,281㎡(추모공원, 시민공원, 진입도로) - 건 물 : 연면적 18,262㎡, 1개동(화장장, 유족대기실) - 화장로 : 11기 2. 승화원(화장시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ㅇ 연 혁 - 1930.03 : 설립(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 1970.09 : 현 위치 이전(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 1986.12 : 승화원 신축(현대식 화장로 15기) - 1992.12 : 화장로 1기 증설(총 16기) - 2000.12 : 화장로 7기 증설(총 23기 운영) 기사대기실 및 화장실 신축 - 2006.09 : 구형 화장로 16기 교체 - 2007.12 : 화장로 전동대차 설치 - 2010.06 : 화장로 백연방지설비 설치 ㅇ 시설규모 - 부 지 : 30,282㎡ - 건 물 : 연면적 8,799㎡, 4개동(화장장, 봉안당, 관리동, 기사대기실) - 화장로 : 23기

○ 친환경 장례문화 유도를 위해 뉴질랜드 정부가 시신 화장 시 지원금을 부여하는 것은 서울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의 시민들의 장례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책 모색에 참고할 수 있으며, 무연고 및 빈곤층 사망자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죽음과 유족들에 대한 복지 정책의 확장 차원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Support Net Rotorua(장애인서비스 지원시설)

□ 서울형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

o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81조

o 지원대상 및 기준 : 243개소, 이용인 3,041명, 종사자 2,280명

구 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현황	41개소(시립 1, 민간 40)	39개소(시립 2, 구립1, 민간 36)	163개소(구립1, 민간162)
이용인 / 종사자	2,007명 / 1,738명	427명 /381명	607명 / 161명
거주기간	제한없음	30일이내, 필요시 연장가능	제한없음
실비 이용료 (시설운영위원회 결정)	평균 453천원/월	평균 470천원/월	100천원~450천원/월
예산	108,935백만원(국시비50:50)	20,118백만원(시비100%)	13,710백만원(시비 1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요양, 급식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정원 : 5인~9인)

※ 안심돌봄가정 운영모델(유닛구조) 도입하여 신규시설 확충

※ 유닛구조 : 공용공간 중심의 공간 배치로,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환경 조성

□ 장애인 지원 시설 및 서비스

※ 장애인거주시설

※ 중증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 단기거주시설 개소

※ 시설거주 장애인의 개인 특성 및 욕구에 기초한 독립 주거생활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쉼터 확충: 경로당 등 지역내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고령의 장애인에게 자조모임 공간 조성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복지서비스 제공

○ 해당 시설의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과 노인의 식사 및 가사 지원, 간병인 파견 지원, 주간 프로그램 시행, 병원 연계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등임. 무엇보다 건강 지원 서비스를 특화하여 장애인 재활 지원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주요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재활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특화하여 지원하고 있는 만큼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지원에 대한 복지정책의 연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3. Bupa The Garden Retirement Village ane Care Home (은퇴자 거주 돌봄 마을)

- 시니어 은퇴자들이 거주하는 독립된 주거 공간과 다른 한쪽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한 노인들이 공동으로 주거하는 건물이 있으며,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시설 이용자들은 통합형 복지서비스 형태로 건강한 노인과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대상을 특정하여 시설별 서비스가 다르게 제공하고 있기에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에 대하여 정책을 제안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은퇴자들을 위한 별도의 거주 돌봄 마을을 운영을 참조하여 지역사회 내의 은퇴자 및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의 지역조직화 및 체계화의 방안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뉴질랜드의 은퇴자 거주·돌봄 마을(Bupa The Garden Retirement Village ane Care Home)이나 호주의 코론지 마을처럼 자신들의 주거 공간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기반의 치매 친화적 안심마을 조성 정책 검토가 필요함.
-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인구와 이에 대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여, 개별적인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 및 장애의 경중에 따른 서비스 지원과 생활지원의 차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좀 더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와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가능한 서비스와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Matthew Talbot Hostel(노숙인 시설)

○ 2016~2019년 우리나라의 노숙인 수는 16,000여 명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년도에 14,866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현재 서울시에서는 종합지원센터(3개소), 일시보호시설(4개소), 따스한 채움터 등 이용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팀, 거리상담반, 위기대응콜 등을 통해 노숙인 실태조사, 여름철·겨울철 보호대책,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거리노숙인 대상 시설 이용 인원은 일평균 취침인원 294명, 급식 1,139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 명)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만나샘	옹달샘 드롭인센터	햇살 보금자리	디딤센터
취침	294	133	16	44	17	38	30	16
급식	1,139	236	235	159	178	186	85	60

- 7,010건 상담(입원 244건 등), 위기대응콜 2,268건 접수(현장출동 497건 등)

○ 노숙인 거리상담반의 상담 및 조치 33,405건 중 시설연계 393건(생활시설 입소 155), 병원입원 252건, 119신고 62건, 공적복지 선정 95건에 이름

○ 그러나 노숙인 정책 관련하여서는 노숙인들이 시설 입·퇴소를 반복하는 등 노숙의 만성화 문제를 겪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노숙인 입소자별 사례 관리 매니저를 배정하여 각 개인별 필요에 맞게 자립 지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립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계 방안 서비스 방향을 시사함.

○ 서울시는 기존 시설 중심 지원에서 탈피하여 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예방과 주거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향후 노숙인 문제 해결 및 노숙인 예방을 위해 민간단체(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Riverwood Commonity Centre(종합사회복지관)

□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ㅇ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42조

ㅇ 사업대상 : 총 99개소(시립 1, 구립 54, SH/LH 30, 법인 14)

ㅇ 사업내용 : 3대 기능(사례관리 · 지역조직화 · 서비스제공) 추진,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

ㅇ 사업예산('23)

- 운 영 비 : 96,689백만원 ※ 구립·법인 인건비·운영비 75%, 그 외 100% 지원
- 기능보강 : 6,688백만원 ※ 시립 100%, 영구임대 70% 이내, 구립·법인 70~30% 지원

○ 리버우드 커뮤니티 센터는 기능 면에서 한국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유사하나, 운영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 우리의 경우 정부 직영이나 민간법인 위탁 운영이 다수인데 반하여, 해당 센터는 주민의 제안과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민 봉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지원금과 지역 기부금으로 운영하나 시설 회계, 감사 등을 주민공동체에서 관리함.

○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지만 아동, 장애인, 노인 등으로 점차 분화되어 세분화 된 것과 달리 리버우드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이 연령별, 성별, 출신 국가별, 장애별 등의 제약과 구분 없이 이용하는 통합형 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음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를 전달해주는 중심 역할을 해왔으나 단순 생계지원서비스 제공과 타 지역복지관과의 차별성 부족 등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주민 공동체에 의해 직접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리버우드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관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별 특징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해 보임.

6. 시드니 시의회 / 시드니 시청

○ 서울의 경우 고비용사회인 것이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호주의 시드니도 급격하게 월세가 올라간 데 반해 출생률에 큰 영향이 없었음. 이는 호주의 경우 출산율 정책을 이민에 의존하여 호주에 경제적·기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민을 허용해왔던 점이 유효했음

○ 호주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의 합계출산율과 이민정책(외국 유학생 및 기술 보유자 등)의 연관성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향후 서울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쇄신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호주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안정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음. 이는 코로나19 치명률(호주 0.2%, 한국 0.4%)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전 세계적인 감염병 질환 확산 속에서 호주가 성공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신속한 환자 전원과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 이번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을 계기로 전 세계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면, 향후 호주는 공공병원에 1,300억 달러를, 서울시는 공공의료 확충에 6120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는데,

○ 다만, 현재 서울시가 계획한 바대로 공공의료 인프라가 확충되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 확보 계획과 기존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이탈 방지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호주의 지방정부 역할은 지역단체에 보조금 제공, 공공시설 이용 지원, 어린이집 등을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의 약 25-35% 수준임. 지방정부는 관리 하고 있는 시설·건물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22년 10월 호주에서 새로운 직장관계법이 통과되어 2023년 1월부터 직장인이 배우자나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안전 및 지원 조치의 일환으로 10일의 유급휴가(paid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Leave; FDV)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더하여, NSW주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공공부문의 임시직(casual)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일간의 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보도됨

○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에서 직원들 간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직장내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고용주가 피해자 안전 및 지원 조치를 시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유급휴가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도 함. 그러나 피해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음. 그런데 호주는 직장 밖 연인이나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도 유급휴가를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 향후 근로자들의 직장내 안전과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유급휴가 제도 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단, 정규직과 임시직 및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휴가제도의 실제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Fighting Chance(장애인직업재활시설)

○ ‘21년 기준 서울시의 직업재활시설은 138개소로 4,263명 이용(보호작업장 116개소, 근로작업장 13개소, 직업적응훈련 9개소) 중에 있으며 지방이양사업으로 제빵, 까페, 비누, 쇼핑백, 화장지 등을 제조하고 있음.

’23년 주요 개선사항

-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민간연계 등 일자리 수 확대(7,155→7,611개, 456개 증)** 확대
  - 공공일자리(441개 증), 민간연계(15개 증)
- **장애인 신규 일자리 발굴 강화**
  - 발달장애인 우편보조, 장애 예술인, 대기업·재택 연계 고용처 발굴 확대

○ 호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한국의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주기능 면에서 유사하나 직업기술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한 일상 생활 속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같이 복합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삶의 기술의 다양성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단순히 직업재활 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시하는 호주 장애인직업재활기관의 사례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정책적 기조로 삼는 서울시에서도 참고해 볼 점으로 사료됨.

○ 장애인에게 일대일로 보호사를 매칭하여 개인의 능력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유형과 수준에 따라 최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며, 일자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유형별 특성에 따른 전문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장애인직업재활 구조의 변화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8.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 호주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만 주택 임대료가 매우 높아서 주거 안정성이 낮고 주거 문제가 심각함. 현재 진행 중인 주정부 선거에서도 쟁점이 되는 3대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주택정책임. 최근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이주를 하여 임금을 받더라도 시드니 시내에 주거지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움. 주거비와 교통비로 지불하면 사실상 돈을 저축하기가 쉽지 않음.

○ 호주의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지원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있어 사회진입 계층을 위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지원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반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미혼남녀의 결혼 소요 비용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집 장만인 것과 주택자산 보유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보아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마련은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의 공적 주거지원 비율이 낮은 부분을 감안할 때, 호주의 주거정책을 고려하여 신혼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의 실질적인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시설퇴소아동 및 청년 등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거 안정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필요한 주거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각도의 지원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9. 건강증진원

○ 뉴질랜드는「지방정부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음주금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오클랜드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음주규제조례」를 통해 공공장소 및 자동차 등에서 술의 소유 및 소비를 금지하고 있음.

> ‣ 제9조 및 10조 (벌칙규정) 뉴질랜드 경찰은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2)』제169조에 따라 규제 위반자에 대해 조사, 체포 등을 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규제법 (Local Government (Alcohol Ban Breaches) Regulations 2013) 제4조에 따라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국민건강증진법」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통해 관할구역 내 특정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서울시는 현행「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음주금지구역'을 지정하려고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임.

○ 이번 서울시의 '금주구역' 지정 개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일부 서울시민들은 한강에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 지정은 필수라는 목소리도 있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반대의견(64%)도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뉴질랜드에서는 '음주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를 거쳤는지? 지정된 '음주금지구역'의 단속 등 관리를 누가(경찰, 관할구역 공무원) 하고 있는지? '음주금지구역' 운영의 성과와 정책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서울시의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6 출장경비 정산 내역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공무원 여비 규정」 등

- 의원별, 직원 직급별, 도시등급별 등 국외여비 지급 기준

○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상임위원회 비교시찰시 의원 1인당 연간 400만원(직원 3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00만원, 사무관리비 510만원 이내 예산지원

□ 소요 예산: 58,950,000원

○ 의원여비 : 36,000,000원 (1인당 4,000,000원)

-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원국외여비(205-04)

○ 직원여비 : 13,600,000원(1인당 3,400,000원)

-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 사무관리비 : 5,100,000원

-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3)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250,000원

-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의정운영공통경비 : 2,000,000원

-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 산출근거

○ 의원여비 : 35,675,959원 (4,000,000원×8명 + 3,675,959원)

구 분	예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합계 (A+B)	항공운임 (A)	체 재 비 ($)				비고 (여비등급)
				소계(B)	일 비	식 비	숙박비 (실비상한)	
계	35,675,959원	35,718,685원	19,665,700원	$12,704 16,052,985원	$1,208 1,525,797원	$3,657 4,620,564원	$7,840 9,906,624원	
강석주	4,000,000원 (예산 상한액)	4,005,341원	2,158,800원	$1,461 1,846,541원	$35×8일 ×50% =$140 176,904원	$78/3×11식 +$58/3×7식 =$421 532,397원	$160×4박 + $130×2박 =$900 1,137,240원	제1호 라목 나등급, 다등급
유만희	4,000,000원 (예산 상한액)	4,005,341원	2,158,800원	$1,461 1,846,541원	$35×8일 ×50% =$140 176,904원	$78/3×11식 +$58/3×7식 =$421 532,397원	$160×4박 + $130×2박 =$900 1,137,240원	제1호 라목 나등급, 다등급
이소라	4,000,000원 (예산 상한액)	4,005,341원	2,158,800원	$1,461 1,846,541원	$35×8일 ×50% =$140 176,904원	$78/3×11식 +$58/3×7식 =$421 532,397원	$160×4박 + $130×2박 =$900 1,137,240원	제1호 라목 나등급, 다등급
김영옥	4,000,000원 (예산 상한액)	4,005,341원	2,158,800원	$1,461 1,846,541원	$35×8일 ×50% =$140 176,904원	$78/3×11식 +$58/3×7식 =$421 532,397원	$160×4박 + $130×2박 =$900 1,137,240원	제1호 라목 나등급, 다등급
윤영희	4,000,000원 (예산 상한액)	4,005,341원	2,158,800원	$1,461 1,846,541원	$35×8일 ×50% =$140 176,904원	$78/3×11식 +$58/3×7식 =$421 532,397원	$160×4박 + $130×2박 =$900 1,137,240원	제1호 라목 나등급, 다등급
최호정	4,000,000원 (예산 상한액)	4,005,341원	2,158,800원	$1,461 1,846,541원	$35×8일 ×50% =$140 176,904원	$78/3×11식 +$58/3×7식 =$421 532,397원	$160×4박 + $130×2박 =$900 1,137,240원	제1호 라목 나등급, 다등급
황유정	3,675,959원	3,675,959원	2,395,300원	$1,014 1,280,659원	$35×5일 ×50% =$88 110,565원	$78/3×11식 =$286 361,390원	$160×3박 =$640 808,704원	제1호 라목 나등급
김 경	4,000,000원 (예산 상한액)	4,005,341원	2,158,800원	$1,461 1,846,541원	$35×8일 ×50% =$140 176,904원	$78/3×11식 +$58/3×7식 =$421 532,397원	$160×4박 + $130×2박 =$900 1,137,240원	제1호 라목 나등급, 다등급
최기찬	4,000,000원 (예산 상한액)	4,005,341원	2,158,800원	$1,461 1,846,541원	$35×8일 ×50% =$140 176,904원	$78/3×11식 +$58/3×7식 =$421 532,397원	$160×4박 + $130×2박 =$900 1,137,240원	제1호 라목 나등급, 다등급

※ 기준환율: USD 1=1,263.60원 ('23.2.9,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체재비 산정 : 일비 8일, 숙박비 6박, 식비 18식
(의원 1인은 일비 5일, 숙박비 호주 3박, 식비 호주 11식으로 산정)

※ 항공권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이후 구매 예정으로 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 **직원여비 : 13,600,000원 (3,400,000원×4명)**

구 분	예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합계 (A+B)	항공운임 (A)	체 재 비 ($)				비고 (여비등급)
				소계(B)	일 비	식 비	숙박비 (실비상한)	
계	**13,600,000원 (예산상한액)**	**14,695,425원**	**8,635,200원**	**$4,796**	**$480**	**$1,276**	**$3,040**	
				6,060,225원	**606,528원**	**1,612,353원**	**3,841,344원**	
박지향	3,400,000원 (예산상한액)	3,673,856원	2,158,800원	$1,199	$30×8일 ×50% =$120	$59/3×11식 +$44/3×7식 =$319	$137×4박 +$106×2박 =$760	제2호 나등급, 다등급
				1,515,056원	151,632원	403,088원	960,336원	
이병윤	3,400,000원 (예산상한액)	3,673,856원	2,158,800원	$1,199	$30×8일 ×50% =$120	$59/3×11식 +$44/3×7식 =$319	$137×4박 +$106×2박 =$760	제2호 나등급, 다등급
				1,515,056원	151,632원	403,088원	960,336원	
우현재	3,400,000원 (예산상한액)	3,673,856원	2,158,800원	$1,199	$30×8일 ×50% =$120	$59/3×11식 +$44/3×7식 =$319	$137×4박 +$106×2박 =$760	제2호 나등급, 다등급
				1,515,056원	151,632원	403,088원	960,336원	
김종훈	3,400,000원 (예산상한액)	3,673,856원	2,158,800원	$1,199	$30×8일 ×50% =$120	$59/3×11식 +$44/3×7식 =$319	$137×4박 +$106×2박 =$760	제2호 나등급, 다등급
				1,515,056원	151,632원	403,088원	960,336원	

※ 기준환율 : USD 1=1,263.60원 ('23.2.9,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체재비 산정 : 일비 8일, 숙박비 6일, 식비 18식
※ **항공권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이후 구매 예정으로 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 **사무관리비 : 5,100,000원**

- 차량 임차료 : 5,100,000원(850,000원 x 6일)

○ **의정운영공통경비 : 2,000,000원**

- 일반통역비 : 900,000원(일반 통역비 150,000원 x 6일)
- 전문통역비 : 1,100,000원(기관당 통역비 275,000원 x 4개 기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250,000원**

- 상임위 비교시찰 관련 기념품, 간담회 개최 등

※ 산출기준
▸ 여비(일비/숙박비/식비)
◦ 국가등급: 나등급(호주), 다급(뉴질랜드) / ◦ 일비 8일, 숙박비 6일, 식비 18식
◦ 의원여비: 1인당 예산배정액 400만원(「2023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기준환율: USD 1=1,263.6원 (′23.2.9,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별첨 1 공무국외활동 일정변경 보고

-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공무국외활동 일정변경 보고

의 장
김현기 4/4

☐ 공무국외활동 변경 개요

○ 기　　간 : 2023.3.16.(목) ~ 3.23.(목) 〔6박 8일〕

○ 변경내용 (당초) 호주, 뉴질랜드의 11개 기관·시설 방문

(변경) 9개 기관·시설 방문으로 변경(3개 기관 취소, 1개 기관 추가)

☐ 기관방문 변경 내용

○ 방문 취소 : 3개 기관

☞ 3/22(수) 공무국외활동 성과공유 및 정책검토 간담회로 대체 추진

방문기관	당초 방문일시	미방문(취소) 사유
건강증진원	3/17(금) 14:30	○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방문 취소 - 항공편 지연으로 13:58분에 공항도착(15:00에 입국수속 완료)하여 부득이 기관 방문 취소함
영케어러 추진단	3/22(수) 10:00	○ 코로나19로 인해 기관 전면 폐쇄 -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기관 전면 폐쇄되어 기관방문을 취소함
입양·노인케어 장애인돌봄 마을	3/22(수) 14:00	○ 코로나19로 인해 돌봄마을 출입 제한 - 코로나 19로 돌봄마을 출입이 제한되어 현장 방문 취소함

○ 방문 추가 : 1개 기관

방문기관	방문일시	기관방문 추가 사유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3/21(화) 16:00	○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방향 논의 - 이민·인구·출산·노인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추가

작 성 자 수석전문위원 : 박지향☎2180-8136 의사지원팀장 : 황동연 ☎8138 담당 : 이병윤 ☎8139

【서식】 **공무국외활동 일정 변경 및 방문 취소 사유서**

기관 방문 취소 사유서		
계 획 서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계획	
기존 일정	일정	방문기관 : 건강증진원 - 북부지역사무소 (Health Promotion Agency) 방문일시 : '23. 3. 17. 14:30
	담당	성 함 : Silvia, Melissa Lelo 사 무 실 : +64 21 228 4299 이 메 일 : m.lelo@hpa.org.nz
변경 사유 또는 취소 사유 ※ 증빙자료 첨부	◈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방문 취소 - 당초 12:05분에 뉴질랜드 공항에 도착하여 14:30분에 뉴질랜드 건강진흥원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항공편 지연으로 13:58분에 공항 도착(15:00에 입국수속 완료)하여 부득이 기관방문 취소함	

2023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시찰단장 성명 강 석 주 (인)

증빙자료 항공편 지연 확인서

AIR NEW ZEALAND

GSA Korea of Air New Zealand
Lilmited 12th Twin Tree Tower A, 6
Yulgok-ro, Jongro-gu, Seoul, 03142, Korea
Telephone 82-2-737-4025
Fax: 82-2-775-5158

30 March 2023

지연 확인서
DELAY REPORT

하기와 같이 항공편이 지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This is to inform that the flight has been delayed as described below.

1. 편명／FLIGHT **NZ76**

2. 년／월／일 YEAR/MONTH/DAY **2023 년 3 월 16 일**
YEAR MONTH DAY

3. 구간／PORTION **인천(Incheon) → 오클랜드(Auckland)**

Schedule	08:50 PM	12:05 PM (+1)
Estimate	10:42 PM	1:58 PM (+1)

4. 지연시간／LENGTH OF TIME **1 시간 40 분**
HOUR MINUTES

5. 사유／REASONS

The delay to your flight is a result of unexpected maintenance.

에어뉴질랜드 한국지사
AIR NEW ZEALAND KOREA OFFICE

【서식】 **공무국외활동 일정 변경 및 방문 취소 사유서**

기관 방문 취소 사유서

계 획 서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계획	
기존 일정	기관 방문	일정	방문기관 : Carers NSW Australia(영케어러추진단 지역사무소) 방문일시 : '23. 3. 22. 10:00
		담당	성 함 : Anne Shaw, Kathleen Caller 사 무 실 : +61 2 9280 4755 이 메 일 : kathc@carersnsw.org.au
	현장 답사	일정	답사장소 : Anglicare Mowll Village (입양·노인케어·장애인돌봄 마을) 방문일시 : '23. 3. 22. 14:00
		담당	성 함 : Amie Williams 사 무 실 : +61 436 639 265 이 메 일 : amie.williams@anglicare.org.au
변경 사유 ※ 증빙자료 첨부		◈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기관(Carers NSW Australia)이 전면 폐쇄되었고, 현장(Anglicare Mowll Village) 출입을 제한하여 부득이 방문 취소함 ○ 공무국외활동 성과공유 및 정책검토 간담회로 대체 추진	

2023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시찰단장 성명 강 석 주 (인)

증빙자료 Carers NSW Australia 기관 폐쇄 통지 메일

6:46 • 35%

답장 전달 삭제

FW: I'm sorry.

Kathleen Caller
2023. 3. 21. 오후 4:26:13

Hi Clair,

I'm sorry but unfortunately we will not be able to accommodate you this week at all. Please note that there will not be anyone to meet with tomorrow morning. The office is shut to workers at the moment. The reception staff are unable to assist you so please DO NOT attend the office tomorrow.

As I explained to Michael Stern and Fred Koh, we may be willing to meet in the future but in this instance we are unable due to logistical reasons and other obligations.

I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our organisation and I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you at another time.

Kind Regards,
Kath

Kath Caller
Manager, Communications
Carers NSW

Carers NSW Australia

P 02 9280 4744
F 02 9280 4755
kathc@carersnsw.org.au

Level 10, 213 Miller St
North Sydney NSW 2060
Gorualgal people of the Eora Nation

carersnsw.org.au

Carers NSW acknowledges the Traditional Custodians of the land on which we live and work and their continuing connection to land, sea, sky and waters. We pay respect to Aboriginal People, to their unique and diverse cultures, and to Elders past and present.

AN AUSTRALIA THAT VALUES AND SUPPORTS ALL CARERS AN AUSTRALIA THAT VALUES AND SUPPORTS ALL CARERS

This email and any attachments may be confidential and contain privileged information. It is intended for the addressee only. If you are not the intended recipient you must not use, disclose, copy or distribute this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or privilege are not waived or lost by reason of the mistaken delivery to you. If you have received this message in error, please delete and notify the sender.

QIC ACCREDITED carers employers